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80호의4서식] <개정 2023. 3. 20.>

(앞쪽)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관리번호	

*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.

집합투자증권 거래명세서

(금융투자업자 제출용)

① 금융회사등(제출의무자)		② 사업자등록번호		③ 거래기간	

④ 일련번호	인적사항		⑦ 계좌번호	⑧ 계좌구분	거래구분			집합투자증권						거래금액		
	⑤ 주민등록번호	⑥ 성명			⑨ 거래구분	⑩ 장내/장외	⑪ 거래일자	⑫ 국내/국외	⑬ 통화코드	⑭ 증권표준코드	⑮ 집합투자기구 상품명	⑯ 기본공제 구분	⑰ 모집구분	⑱ 거래수량	⑲ 거래가액	⑳ 수수료 등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2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투자기구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금융회사등(제출의무자)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297㎜×210㎜[백상지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]

작 성 방 법

이 서식은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1. ① 금융회사등 및 ② 사업자등록번호란: 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법인명 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2. ③ 거래기간란: 거래명세서 제출 대상기간을 적습니다.
3. ④ 일련번호란: 계좌보유자 및 계좌번호별로 거래일자가 빠른 순서부터 적습니다.
4. ⑤ 주민등록번호 및 ⑥ 성명란: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5. ⑦ 계좌번호란: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6. ⑧ 계좌구분란: 집합투자증권 등을 거래한 계좌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코드를 적습니다.

구분	일반계좌	특례 적용 계좌							
		분리과세				비과세, 면제			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(ISA)
		뉴딜펀드	공모부동산펀드	세금우대종합저축	투융자펀드	비과세종합저축	재형저축	기타	
코드	A	B	C	D	E	F	G	I	J

7. ⑨ 거래구분란: 거래구분에 따라 다음 코드를 적습니다.

구분	수량 증가(입고)							수량 감소(출고)						
	매수	결산 · 분배	기타	계좌간이체				환매 · 양도	해지 · 해산	기타	계좌간이체			
				본인	타인						본인	타인		
					양수	수증	상속					양도	증여	상속
코드	01	10	11	12	13	14	15	32	33	38	39	40	41	42

8. ⑩ 장내/장외란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"01"로 적고 그 외(장외)는 "02"로 적습니다. 다만, ⑨ 거래구분 코드가 "51(결산분배)"인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.

구분	장내거래	장외거래
코드	01	02

9. ⑪ 거래일자란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0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적습니다.
10. ⑫ 국내/국외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69조의2에 따른 국외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코드 "9"로 적고 그 외는 "1"로 적습니다.

구분	국내집합투자기구	국외집합투자기구
코드	1	9

11. ⑬ 통화코드란: 국외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국가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통화코드를 적습니다(예 USD, CNY 등).
12. ⑭ 증권표준코드란: 한국거래소(비상장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)에서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, 집합투자증권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.
    ※ 국외증권인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(ISIN코드)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의 소재 국가코드를 적습니다.
13. ⑮ 집합투자기구 상품명란: 집합투자기구의 상품명을 적습니다. 집합투자기구 상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기구 명칭 또는 집합투자업자 명칭을 적습니다.
14. ⑯ 기본공제 구분란: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 해당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구분 코드번호를 적습니다.

구분	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(기본공제 5,000만원 적용 대상)	이 외 집합투자기구(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대상)
코드	41	49

    ※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5천만원 적용 대상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.
    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적격집합투자기구일 것
    나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닐 것
    다.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(국내상장주식, 국내주식형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)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
15. ⑰ 모집구분란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면 "공모", 제8호이면 "사모", 그 외의 경우는 "기타"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.

구분	공모	사모	기타
코드	01	02	09

16. ⑱ 거래수량란: 거래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(주수, 좌수 등)을 적습니다.
17. ⑲ 거래가액란: 거래구분에 따라 아래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(국외집합투자기구는 매매일 현재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).

구분	거래가액
매수, 결산 · 분배	실제 매수가액 또는 분배받은 금액
환매 · 양도, 해지 · 해산	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(실제 매도가액 또는 환매 시 기준가격 × 환매좌수)
증여(수증) · 상속	법령에 따라 정한 가액(증여 · 상속일 현재 기준가격 × 증여 · 상속 좌수)

18. ⑳ 수수료 등란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따른 각종 보수 ·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,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액을 적습니다.